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회수)

제　　목 휴가사용,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각 부서

내　　용

1. 개요

○○○○○(○○○○○)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휴가 사용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조에 따른 경조사 특별휴가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 조례)」 제23조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차이는 다음 <표1>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비교표” 와 같다.

<표1>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비교표

구분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상	일수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 4.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2021. 8. 18.경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 적용 기준을 시달하였고(소방청 소방정책과-6848(2021.8.18.,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2022. 2. 18.경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적용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휴가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고 기준을 재시달하였고(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30(2022.2.18.,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기존 복무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 등 고려 소급 적용을 자제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2022. 2. 18. 이후 특별휴가를 사용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시・도 조례를 비교하여 시・도 조례에만 있는 특별휴가 종류는 시・도 조례를 따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시·도 조례에 공통으로 적용된 항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9. 12.~현재) 동안 ○○○○○ 휴가 등 복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바 ○○○○○ 소방○ ○○○이 2022. 10. 25. 백부喪을 이유로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월간 초과근무 집계 시 6시간 45분이 초과 반영되어 초과근무수당 78,90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나. 장기재직휴가 초과 사용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 조례)」 제23조 제1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복무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2013. 8. 2. 개정되어 재직기간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5일간 장기재직 특별휴가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5. 8. 7. 개정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휴가 범위가 확대 개정되었으며, 2017. 8. 4. 개정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0일 신설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상향 개정되었고, 2020. 4. 3. 개정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5일에서 20일로 상향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0. 1. 21. 강원도 총무행정관에서 시행한 「강원도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지침(강원도 지침)」의 내용을 보면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부서별 휴가 인원 및 시기를 안배, 연차주기 내 3회까지 분할 가능(단,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회까지 분할 가능), 소급 및 이월사용 불가, 부서별 대상자 선정기준, 휴가 시 유의사항 등 세부 시행지침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세부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해당 재직기간 별 휴가 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9. 12.~현재) 동안 ○○○○○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현황을 확인한바 ○○○○○ 소방○ ○○○는 2004. 5. 1. 최초 임용되어 2012. 2. 1. 재직기간 10년을 획정 받은 후 강원도 소방행정과-4063(2022. 3. 2.)호에 따라 2022. 3. 1. 재직기간 20년을 획정 받았으므로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조항이 신설된 2017. 8. 4.부터 2022. 2. 28.까지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총 2회에 나누어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 ○○○○○○에 근무중이던 2018. 7. 30.부터 2018. 8. 3.까지 5일간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2022. 2. 16.부터 2022. 2. 25.까지 9일간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보다 4일을 초과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하였다.

다. 연가가산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2]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2. 12.~현재)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 3. 16. 신규임용된 2명에 대해 2021년 연가산정 시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아니

---

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2)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됨에도 법정연가일수에 연가미사용 또는 병가 미사용을 사유로 연가를 가산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은**

[시정(회수)] 휴가·연가가산 등 복무관리가 잘못되어 4명에게 지급된 급여 및 수당 742,83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 주의

제　　목 정기평정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 ○○○○○ 소방○ ○○○

② ○○○○○ ○○○○○ 소방○ ○○○

내　　용

1. 개요

○○○○○(○○○○○)에서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 등 승진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전문능력성적 평정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소방위 이하의 계급에서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전문교

육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하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 경력평정점 25%,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소방청예규)」 제12조에는 소방사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제1종대형운전면허 1.5점,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1.5점으로 하고 자격증은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전문능력 평정 [별첨] “소방위 이하 전문능력 평정규정”과 같이 평정하고, 동종 하위자격의 취득은 평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전문능력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관련 자격증 취득 또는 보유현황을 꼼꼼히 적용하여 잘못 평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 직속기관으로 조직개편 후 총 2회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소방○ ○○○의 경우 임용전에 취득한 소방설비기사(전기) 자격을 전문능력성적 평정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평정점 3점을 평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체력검정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소방청예규)」 제7조에 따르면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4~5월중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제7조의2에 따르면 체력관리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제9조에서는 소방감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과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의사 진단서를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계급별 평균점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2년 6월 이내의

---

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중인 사람
3.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
5. 휴직(제2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사람
7. 신체 장애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제9조제2항제4호・제5호・제6호 및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로 소급하여 부여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0점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소방령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신체적 운동능력 측정을 위해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체력검정 미실시자의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 평정점을 부여하여 승진대상자명부가 잘못 작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9. 12.~현재) 동안 체력검정 미실시자에 대한 평정점 부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 ○○○의 경우 공상 질병으로 2022년 체력검정을 미실시 하였고,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방공무원 전체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아 최근 2년 6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점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9년 강원도 소방장 평균점수인

4.43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3.5점만 부여하였고, 소방○ ○○○은 2022. 10.경 실시한 체력검정 시 질병 등 신체장애를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아 규정상 부여점수인 2.5점으로 적정하게 평정하였으나, 동일 질병 사항에 대해 2023. 3. 24.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통보를 받음에 따라 소방○ ○○○의 경우와 같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9년 강원도 소방장 평균점수인 4.43점을 소급하여 평정하여야 함에도 소급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2. 9. 21.부터 현재까지 ○○○○○ ○○○○○에서 정기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소방위 이하 직원에 대한 전문능력 평정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맞게 평정하여야 함에도 2020. 3. 16. 소방위로 경력채용된 소방○ ○○○에 대한 전문능력성적 평정 시 임용 후 취득한 자격이 없어 0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임용 전 취득한 자격을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정기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3점을 부여하여 평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2. 7. 11.부터 현재까지 ○○○○○ ○○○○○에서 체력검정성적 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 소방○ ○○○과 소방○ ○○

○이 2022년 체력검정평정 시 공무상 질병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각 4.49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소방○ ○○○에게는 3.5점, 소방○ ○○○에게는 2.5점을(2023. 3.경 공상 승인) 부여하여 평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소방청예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소방청예규)」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하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방○ ○○○은 '3. 외상사건 노출직원 보호프로그램 미실시' 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 ○○○에 대한 전문능력성적 평정 및 소방○ ○○○, ○○○에 대한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재산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 주의

제　　목 정기평정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 ○○○○○ 소방○ ○○○

내　　용

1. 개요

○○○○○(○○○○○)는 소속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전문능력성적 평정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제4조, 제16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소방전문 치료센터, 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관

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고, 별표 2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며, 2인 이상의 사망 사고, 어린이 사망 사고, 동료의 사망 사고, 기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를 경험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평가 및 심리상담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소방행정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회[4]에 걸쳐 소방 활동 중 심리적 외상을 입은 직원에게 아래 〈표1〉 “외상사고 노출직원 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후속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다.

<표1> 외상사고 노출직원 보호 프로그램 운영

구분	내용
대상사건	- 2인 이상의 사망사고 - 신체절단 등 참혹현장 사고 - 어린이(영유아) 사망사고 -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동료순직·자살 직·간접적 목격) - 교통사고 현장 1명 이상 사망사고 (20.1.9.추가) - 자살(직·간접적 목격) (20.1.9.추가) - 구급대·직원 폭행·폭언 피해 - 상황실 민원인 폭언피해 (21.1.20.추가) - 기타 참혹한 현장출동 직원 등
대상인원	상기 사건 출동대원 전원
운영방법	○ 사고발생 시 동향보고 - 외상사건 노출직원 발생 시 72시간 이내 대상인원 상담 등 실시 ○ 찾아가는 상담실 연계 긴급심리상담 및 상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 추적상담, 전문의료기관 연계치료 등

※ 자료: 강원도 소방행정과-7099(2023. 4. 17.) 일부 발췌

4) 관련문서: 소방행정과-9562(2018.5.18.), 소방행정과-576(2020.1.9.), 소방행정과-9839(2020.6.16.), 소방행정과-1325(2021.1.20.), 소방행정과-12454(2021.7.9.), 소방행정과-20094(2022.11.1.), 소방행정과-7099(2023.4.17.)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2019. 12.~현재) 동안 심리적 외상노출이 우려되는 9건의 사고에 출동하여 현장활동 대원이 심리적 외상사고에 노출되었으나, 심리상담 등 보호프로그램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아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18. 12. 3.부터 2022. 1. 16.까지 ○○○○○ ○○○○○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이 현장활동 중 심리적 외상사건에 노출되었을 경우 전문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사의 상담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하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단, ‘2. 정기평정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주의, 시정, 권고

제　　목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전 부서

관 련 자 ① ○○○○○ ○○○○○ 소방○ ○○○

② ○○○○○ ○○○○○ 소방○ ○○○

내　　용

1. 개요

○○○○○에서는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 시 활용되는 호흡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호흡보호장비 보유현황

(단위: 대)

구 분	합 계	○○○○○	○○○○○	○○○○○	○○○○○
공기충전기	1	1	-	-	-
공기호흡기 용기	135	61	11	13	50
잠수장비 용기	68	56	4	4	4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5호, 시행 2023. 5. 16.]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령 제2021-240호, 시행 2021. 12. 31.]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5]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법률 제18269호, 시행 2021. 12. 16.]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통산자원부령 제446호, 시행 2023. 1. 1.] 제39조에 따르면 공기호흡기 및 잠수장비 용기는 이음매 없는 용기에 해당하여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 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기호흡기 및 잠수장비 용기를 신규검사일 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5년 또는 3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확보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5. 15. ~ 5. 26.) 중 공기호흡기 및 잠수장비

---

5)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1) 공기충전기는 제1호 서식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되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은 제조사 권장기준을 따를 수 있다.
2) 공기충전기는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 내부는 항시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4)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7) 호흡보호장비를 세척·충전·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그 관리 이력을 입력한다.

용기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기호흡기 및 잠수장비 용기 총 11개 중 9개에 대하여 재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2개는 감사일 현재까지 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안전 및 그 성능을 유지하려는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공기충전기 관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5호, 시행 2023. 5. 16.]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령 제2021-240호, 시행 2021. 12. 31.]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 매뉴얼에 따르면 충전원은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충전원 부재 시 충전원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21년 3월 소방청에서 시달한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강화 운영기준 알림”[6]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공기질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2021. 3. 10.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충전원 부재 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전원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주 1회 이상 공기충전기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는 주요 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고,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6) 청 장비기획과-1051(2021. 3. 9.)호「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강화 운영기준 알림」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및 충전결과를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함이 타당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5. 15. ~ 5. 26.) 중 공기충전기 주간점검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5건 중 4건(2건은 충전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충전원 부재 시 주간점검을 미실시)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1건은 공기충전기 가동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기충전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공기호흡기 용기 133개에 대해 충전 기한을 초과하여 충전하는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 소방○ ○○○는 2021. 2. 2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 4. 27.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 소방○ ○○○은 2021. 2. 2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 4. 27.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은

[주의] 공기충전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잠수장비 용기 2개에 대해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충전원 부재 시 충전원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수행에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은

[권고] 공기호흡기 및 잠수장비 용기 검사 기한 초과 및 공기충전기 정기점검이 월활히 이루이지고 있지 않아 호흡보호장비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해 주시고, 정기 및 위생점검 관리업무를 본부에서 위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통보, 권고

제　　목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영자 교육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

내　　용

1. 개요

○○○○○(○○○○○)에서는 다양한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요구조자 인명검색 등 선제적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소방 무인비행장치 보유현황

(단위: 대)

부 서 명	보유 드론 및 보유 수량		
	합 계	현장수색용	교육용
○○○○○	3	3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소방 무인비행장치 관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항공안전법」[법률 제18789호, 시행 2023. 1. 19.] 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3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7]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소방청훈령 제266호, 시행 2022. 7. 1.] 제3조, 20조, 24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 운용인력, 도입계획, 예산확보,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8]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월 월간 운용실적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매년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여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운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7)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방안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 무인비행장치 정기점검 등
1. 일일점검: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임무장비의 외관·작동상태
2. 주간점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
3. 특별점검: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단체,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5. 15. ~ 5. 26.) 중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계획 수립 여부 및 일일·주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일점검의 경우 70건, 주간점검의 경우 30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인비행장치의 월간 운용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나.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자 교육훈련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항공안전법」[법률 제18789호, 시행 2023. 1. 19.] 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소방청훈령 제266호, 시행 2022. 7. 1.] 제3조, 19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 운용인력, 도입계획, 예산확보,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9]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9) 소방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1. 이론교육: 월 2시간 이상
가.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따라서 ○○○○○에서는 운용자 등의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현장 안전관리 등 이론교육을 월 2시간 이상,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등 실기교육을 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5. 15. ~ 5. 26.) 중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교육훈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2월 및 2020년은 교육훈련 실시한 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였어도 최소 교육훈련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운용자 조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가. ○○○○○○은

[통보]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은

[권고] 관서별 드론 운영·관리계획 및 운용자 교육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드론 도입 시 상황실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여 주시기

나. 기체의 제원 및 성능
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실기교육: 월 4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
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바랍니다.